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

---

2020. 5. 8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

※ 관련법규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의 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의 3항 2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2조 3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2호)

## I.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에 따라 최장 6개월(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는 산업 또는 기업의 일시적 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로, 기업의 고용유지와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실제로 창원지역 1분기 고용동향의 경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4.5% 급감했음에도, 퇴직자 수는 0.8% 감소하는데 그쳤음. 이는 정부의 고용안정지원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임. (1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인원, 전년 대비 91.2%, 지원금 82.1% 증가)
-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부품·원자재 수급 애로에 따른 산업생산 차질은 물론 수출수요 급감과 해외바이어와의 접촉 애로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
- 특히 대규모 설비와 인력투입을 통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창원지역은 미·중무역분쟁, 보호무역기조 등 기존의 통상악재에 더해 전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많은 기업들은 매출 하락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고용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근로자의 감원보다 향후 국내외 시장 회복을 통한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고용을 이어가고 있음.
- 최근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부터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경우 기존 악재에 더해 더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일부 기업의 경우 당장 6월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기간이 도래하여 근로자의 감원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
- 현재 국내외 시장과 미래성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별 기업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특별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들 기업의 경우 일시적인 환경악화로 인해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불가할 경우에는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할 것임. 특히 산업생산의 핵심축인 숙련인력의 이탈이 이루어진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생산능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미·중 무역분쟁의 종식 기조와 더불어 올해 초 국내기업의 무역확장지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처 등으로 미루어볼 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다면 국내 산업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경우 우리기업의 산업경쟁력을 통한 새로운 기회 실현을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을 활용한 기존 생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II. 건의

- 이에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일시적인 고용유지 어려움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품·원자재 수급 애로, 생산차질, 계약 후 거래중단 등의 사유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20년 5월 8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